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35

발의연월일: 2020. 9. 14.

발 의 자:정일영・이성만・신동근

한병도 • 허 영 • 이형석

김교흥 · 홍영표 · 박상혁

김수흥 · 이탄희 · 허종식

윤관석 • 박홍근 • 문진석

유후덕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,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, 부과요율도 「국세기본법」보다 높은 수준임.

이에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, 요율도 「국세기본법」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5조의3제2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제2항제2호 중 "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"을 "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3(가산금 등) ① (생 략)	제5조의3(가산금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	②
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	
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	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	
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	2
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	
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	
등: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	<u>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</u>
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	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
하는 금액	는 금액